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발의연월일 : 2014. 4. .

발 의 자 : 마동환 위원 외 1인

1. 주 문

- 가.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

[관 련 법 규]

■ 지방자치법 (일부개정 2011. 7.14 법률 제10827호)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(일부개정 2011.10.14 대통령령 제23222호)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(2012. 6. 7 조례 제 871호)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(개정 '09.2.5)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07.3.22)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